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4167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김교홍 · 이기현 · 문진석  
노종면 · 허종식 · 조계원  
박수현 · 모경종 · 민형배  
양문석 · 임오경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국내외 인기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방식도 점차 교묘해지고, 그 규모 또한 방대해지고 있음.

최근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례로 대두되었던 누누티비, 뉴토끼 등 대규모 불법사이트의 경우를 보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K-콘텐츠가 최초 공개되는 날부터 불법 사이트에 유통되고 해당 사이트가 차단되어도 대체 사이트가 다시 생겨나는 등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만연하고 있음.

현재,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있으나,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

임.

또한,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업계의 고통과 피해는 누적되고 있음.

이에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저작권침해대응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전방위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수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차단 조치를 신설하여 빠른 속도로 자행되는 저작권 침해와 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등).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0호가목 중 “제공하는 자”를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

### 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로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권고할 수 있다.

### 4.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제1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4(긴급차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

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2조제2항제4호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제4항 및 제133조  
의4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 29. (생략)                                                                                                                                                    | 1. ~ 29. (현행과 같음)                                                                                                                                                                            |
|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0. -----<br>-----<br>-----.                                                                                                                                                                 |
|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u>자</u> | 가. -----<br>-----<br>-----<br>-----<br>-----<br>-----<br>-----<br>-----<br>-----<br>-----<br>-----<br>-----<br>-----<br>-----<br>-----<br><u>제공하는<br/>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u> |
| 나. (생략)                                                                                                                                                          | 나. (현행과 같음)                                                                                                                                                                                  |
| 31. ~ 36. (생략)                                                                                                                                                   | 31. ~ 36. (현행과 같음)                                                                                                                                                                           |
|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2. (생략)

## <신 설>

② ~ ⑧ (생략)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  
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  
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  
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  
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명  
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 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

-----

-----

-----

-----

-----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신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  
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  
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  
-----.

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  
여 권고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3조의4(긴급차단) 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  
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  
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  
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

제14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 략)

4. 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2항·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 ----  
-----  
-----

|             |                |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③ · ④ (생 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